

<p>등에 대한 권고(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등으로 함.(안 제2조)</p> <p>나. 위원회는 위원장(지역경제국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특별시 지역의 소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3조)</p> <p>다.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p> <p>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p> <p>마.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및 도·소매업진흥법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p>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97.7.1)됨에 따라 구법에 관련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li> <li>○ 새로이 제정 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과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 제22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구법의 폐지와 신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심의회기 위한 것이므로 마땅히 조례를 제정하여 약·소자를 보호해야 할 것</li> </ul>	<p>이며, 설치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5. 질의 및 답변:생략</p> <p>6. 소수의견:없음</p> <p>7. 심사결과:원안가결(재석 14명, 만장일치)</p> <p>8. 기타사항: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p> <p>1. 회부안건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p> <p>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7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나. 회부일자:1997년 10월 30일 다. 의안번호:제928호 라. 상정일자: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97.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97.11.10) 질의·답변, 원안가결</p> <p>3. 제안설명요지(환경관리실장:탁병오)</p> <p>□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사변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참전용사의 공원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의 서비스 향상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려는 것임.</li> </ul> <p>□ 주요골자</p> <p>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의 공원 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p> <p>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p>
---	---

<p>수를 현행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제2항)</p> <p>다. 공원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놀이동산(서울랜드)입장료, 오동공원(드림랜드) 입장료 및 남산공원 전망대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조정함.</p> <p>(1) 서울대공원 놀이동산(서울랜드) 입장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 3,500원→5,000원</li> <li>· 청소년 : 2,500원→3,500원</li> <li>· 어린이 : 1,500원→2,000원</li> </ul> <p>(2) 오동공원(드림랜드) 입장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 1,100→1,500원</li> <li>※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 변동없음.</li> </ul> <p>(3) 남산공원 전망대 시설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 1,600원→2,000원</li> <li>· 청소년 : 1,000원→1,200원</li> <li>· 어린이 : 1,000원→1,100원</li> </ul>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p> <p>○ 동 개정조례안은 6·25사변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토방위와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참전용사의 공원이용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등에우뮈짓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이용하도록 내무부 및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됨.</p> <p>○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늘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잠정적우대조치와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 조항에 따라 시·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 여성들</p>	<p>의 시정참여를 늘려나감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놀이동산(서울랜드) 입장료, 오동공원(드림랜드) 입장료 및 남산공원 전망대시설 사용료 인상은 공원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공원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상이라고 생각됨.</p> <p>서울랜드와 드림랜드의 입장료는 유사 시설 입장료에 비하여 현재 40% 수준에 불과하며, 2년 이상 장기간 입장료의 인상을 동결함으로써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입장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입장료는 당초 민간업체에서 요청하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정한 금액보다 낮게 재조정하고 인상시기도 연초에 요청한 것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말에 인상키로 하고 금번 개정요구한 것이라 사료됨.</p> <p>다만, 인상액을 한꺼번에 10~43%나 대폭 인상한 것이라든지, 입법예고과정에서 시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시보에만 공고하였다는 홍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p> <p>5. 질의 및 답변: 생략</p> <p>6. 소수의견: 없음</p> <p>7.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석 14명, 만장일치)</p> <p>8. 기타사항: 없음</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中改正條例案은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特別市流通産業紛爭調整委員會條例案과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의원 여러분, 이와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와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	---